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1. 16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3년 1월 4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한계를 해소하고,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5조)

1) 교육장에게 위임한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일부 삭제함 (안 제5조제38호)

2)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정함(안 제5조제39호)

○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안

(안 제5조제1호, 제6호, 제15호나목, 제34호, 제41호바목, 제6조1호, 6호, 11호, 제7조1호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일부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제38호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,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, 진로·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,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·감독 항목을 삭제하며, 제39호 중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임.

- 다만, 같은 조례가 지난 2021년 3월 1일 개정되었을 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법령센터 기준 “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” 로 확인되는데 지난 2년간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